

2026

학사관리과 FAQ 모음집

학사관리과 FAQ모음집은 질문빈도수가 높은 사항을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및 학과교육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인터넷 및 앱에서 「홈페이지 학사안내 FAQ」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행정지원실 및 학과에서는 '그룹웨어 - 게시판 - 행정부서공지 - 학사관리과'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I. 수업 1

- 1.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2
- 2. 계절학기 5
- 3. 시험 6
- 4. 공결신청 7

II. 교과과정 9

- 1. 교과과정 10
- 2. 유사 및 대체교과목 13
- 3. 전공 마이크로모듈제 안내 15

III. 학적 17

- 1. 휴학 18
- 2. 복학 23
- 3. 제적 25
- 4. 자퇴 26
- 5. 재입학 28
- 6. 전과 29
- 7. 학적조회·정정 및 증명발급 32

IV. 성적 34

- 1. 성적관리기준 35
- 2. 성적조회 38
- 3. 학사경고 40
- 4. 유급 42
- 5. 이수구분 변경 44



V. 졸업 45

1. 졸업기준 안내 46
2. 졸업논문 50
3. 학사학위취득 유예 52
4. 조기졸업 54

VI 복수부·연계전공 56

1. 복수전공 57
2. 부전공 59
3. 자기설계연계전공 61
4. 융합전공 63

VII 학점인정 신청 65

1. 특별학점 인정 66
2. 군복무중 취득학점 인정 67

VIII 교직 68

1. 교직이수 69
2. 교원자격 필수 요건 71

I. 수업

1.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 수강신청은 선착순입니까?

- 1차 수강신청기간에는 수강제한 인원내 상관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확정기준에 의해 확정 및 탈락이 결정됩니다. 이 때 탈락한 학생은 2~3차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수강신청 즉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이 확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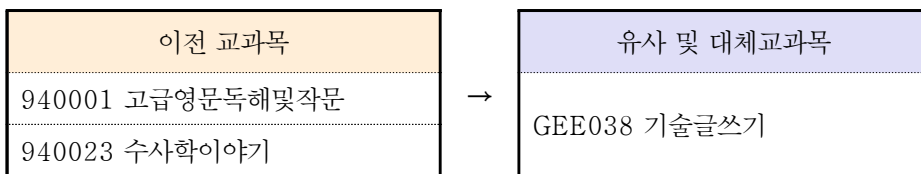
● 인원초과로 수강신청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교양교과는 교양대학(200-6432~3)에서, 전공교과는 소속 학과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인원 증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 2과목 재수강 예정인데 동일한 과목이 유사 및 대체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개의 교과목이 동일한 교과목으로 유사 및 대체된 경우, 유사 및 대체로 지정된 1개 교과목으로 이전에 들었던 2개 교과목까지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수한 2개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한 1개의 교과목 성적만 부여됩니다.

(예시) A학생이 이전에 '고급영문독해 및 작문'과 '수사학이야기'를 수강하였고, 2015-1학기에 재수강을 위해 '기술글쓰기'를 수강신청하고 두 교과목을 재수강으로 신청하게 되면, '고급영문독해 및 작문'과 '수사학이야기'는 삭제되고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성적표에는 '기술글쓰기'만 성적표에 남게 됨(한 교과목만 선택하여 재수강도 가능).





● **우리 학과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목명이 동일한 타 학과의 교과목 수강 시, 우리 학과의 이수구분으로 인정되니까?**

- 교과목이 완벽히 동일한 경우(기호, 숫자 모두 완벽히 일치)에는 학생 본인의 소속학과 이수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시되는 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당 최저 수강 학점이 있습니까?**

- 최저 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신청을 1학점도 하지 않을 시 학점취득 불가 및 이수학기로 인정되지 않으며, 납부 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고 전액 소멸됩니다.

※ 참고: 장학금 지급, 수강신청 확정 등에서는 다학점 이수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 근거: 학칙 제20조(등록)제2항

● **최대 수강신청 학점 보다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최대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졸업 신청학생, 복수(부)전공과 교직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학생은 최대수강신청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월제는 적용안됨)

※ 근거: 학칙 제32조(취득학점)제1항, 제4항

● **교과목 폐강기준이 궁금합니다.**

- 강좌별 수강인원이 아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폐강 됩니다.

이수 구분	수강 인원	비 고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15명 미만	
필수교양	20명 미만	Communication English(유사대체교과목 포함)은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
중핵교양, 토대교양, 기초과학및수학, 일반선택	20명 미만	
평생교육사	20명 미만	

● **같은 교과목을 또 들어도 됩니까?**

- 동일 교과목을 이중 수강할 수 없습니다. 동일 교과목의 성적이 재수강 대상일 경우, 자동 재수강 처리됩니다. ※ 근거: 학칙 제44조(재수강)

● **일반선택 교과목은 모두 P/NP입니까?**

- 아닙니다. 일반선택 교과목은 교양대학에서 개설하는 일반선택의 경우 교과목 성격에 따라 등급제(A+~F) 또는 P/NP로 구분되어 평가 됩니다. 교양대학에서 개설하는 일반선택 교과목의 세부 사항은 매 학기 게시되는 수강신청 안내책자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부(과)·전공에서 개설하는 일반선택은 모두 등급제(A+~F)로 평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러닝 교과목이 뭔가요?**

- e-러닝이란 학습자가 인터넷, 웹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에서 수업, 토론, 과제, 시험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2016학년도부터 본교에서 개설하는 e-러닝 교과목이 개설되며, GeLC(부산울산경남 권역 이러닝 지원센터)와의 협약에 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매학기 3학점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포함 3학점)
e-러닝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60점 이상 이수 시 P로 표기되며, 평점평균 환산에서 제외됩니다.
e-러닝 교과목에 대한 사항은 원격교육지원센터(200-6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절학기

● 휴학생입니다. 계절학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휴학생도 우리대학 계절학기 수강 가능합니다. 단, 수업연한을 초과(학기초과자)한 휴학생은 수강이 불가합니다. 또한, 군휴학생일 경우 수강신청 불가합니다.

※ 근거: 계절학기운영규정 제3조(수강대상)제1항

●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얼마입니까?

- 졸업 시까지 24학점을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근거: 학칙 제32조(취득학점)제2항, 계절학기운영규정 제5조(학점취득)

● 타 대학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였습니다. 본교에서 이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습니까?

- 안됩니다.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재수강할 수 없고, 본교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타 대학 계절학기 수업으로 재수강할 수 없습니다.

● 계절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려는데 인터넷뱅킹에 오류가 뜹니다.

-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는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하므로 은행 업무시간(9:00~16:00) 중, 고지서상의 수강료와 납입 수강료가 일치해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납부하는 시간이 은행 업무시간 내인지, 고지서상 수강료 및 가상계좌번호가 입금 내역과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을 시에는 학사관리과 수업팀(200-6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수납은 안됩니까?

- 카드 수납은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되므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계절학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 수강취소 확정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수강취소 확정일자에 따라 환불금액이 상이하므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업한 일자가 총 수업일수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 및 수강취소가 불가합니다.

※ 근거: 계절학기운영규정 제7조(수업료)

1. 수업개시 3일 이전: 수업료 전액
2. 수업개시 2일 이전 ~ 수업개시 1/3경과 이전: 수업료의 3분의 2
3. 수업개시 1/3경과 후 ~ 수업개시 1/2 경과 이전: 수업료의 2분의 1
4. 수업개시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3. 시험

● 시험시간표는 언제 공지됩니까?

- 시험은 기존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므로 별도로 시간표를 공지하지 않습니다. 강좌별 수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일정을 참고하거나 담당교수의 별도 지시에 따라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017-2학기부터 시행)

● 시험시간표가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시험은 기존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므로 시험시간이 겹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일교수 동일교과목 분반의 합반시험으로 인해 시험시간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교강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시험응시 때 신분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은 어떤 걸 준비하면 됩니까?

- 모바일학생증 도입으로 인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정합니다.
 - * 내국인: 기존 플라스틱 카드형태의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 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모바일신분증 (앱 실행 과정 제시 필요)
 -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시험볼 때 자격증으로는 신분확인이 불가능한가요?

- 모바일학생증, 고등학교학생증, 사원증, 각종자격증, 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캡처이미지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볼 때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학교에서 지정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학생은 해당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결신청

● 공결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 공결 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수업→공결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청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속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승인되면, 전자출결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단, 전자출결을 사용하지 않는 교과목의 경우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야 공결이 인정됩니다. 생리공결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별도 증빙제출 없음)하면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승인이 이루어지며, 전자출결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단, 전자출결을 사용하지 않는 교과목의 경우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야 공결이 인정됩니다.

※ 근거: 공결규정 제4조(공결인정 절차)제1항 및 제2항

● 취업 및 창업 사유 공결의 인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8학기)를 등록한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미등록자는 등록 이후 신청 가능)하며, 공결신청 후 다음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첨부)해야 합니다. 취업 공결의 경우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창업 사유 공결의 경우 '창업 공결 활동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이 해당 학기 시작일 전이며, 제외 업종이 아닐 경우만 인정)'을 소속학부(과)를 경유하여 창업지원단(문의전화: 051-200-6359)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절차는 매 학기 학사공지 참조).
- 또한, 취업 및 창업 공결은 교강사가 제시한 과제를 이행하고(3주당 1회를 기준), 기말 시험 기간 중 2차로 취업 또는 창업유지 증빙용으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또는 창업 공결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만 취업 또는 창업 사유 공결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수업→공결 안내 및 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3학년인데 취창업 공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취창업 공결은 신청 자격 기준이 4학년(8학기 재학중)인 자에 한해 신청가능함으로 8학기 재학중인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아울러, 공결 신청은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등록자는 등록 이후 신청 가능)

● 아르바이트처럼 단기간 일하는 경우도 취업공결이 가능한가요?

-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고용, 개인사업체 운영 등의 경우에는 취업공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취업 또는 창업공결을 신청하기만 하면 학점을 무조건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 취업 또는 창업공결은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여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 시험의 응시 및 학점취득이 불가하다는 규정의 예외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결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해주는 측면이며, 기타 과제나 시험 등 출결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강생들과 동등하게 평가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공결을 승인받은 후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따로 취소신청을 해야 하나요?

- 최초 승인받은 공결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공결기간을 먼저 수정을 하여야 하며, 새로운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통해 신규로 취업공결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취업공결을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 신청 기간이 있습니까?

- 공결은 사유발생 전후 2주일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또는 창업사유 공결은 사유발생 전후 3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병원에 통원하는 경우도 공결신청이 가능합니까?

- 입원하는 경우만 공결로 신청가능(입퇴원 확인서 첨부)하며, 일반적인 통원치료는 공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전염성이 높은 질환(법정 감염병에 한함)으로 인해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격리기간 명시)를 첨부하여 공결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결 신청시 해당일자에 수강하는 교과목 중 특정 교과목에 대해서만 신청 할 수도 있습니까?

- 네, 신청하고자 하는 일자에 수강신청 되어 있는 교과목 목록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클릭하여 공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 교과과정

1. 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반드시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이수하여야 합니까?

- 교과과정은 입학연도 또는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2015학년도에 2학년으로 복학한 경우, 입학연도인 2013학년도 교과과정 또는 함께 졸업하는 학번인 2014학년도 교과과정 중 택일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 근거: 졸업사정 지침 제3조(사정기준) 제1항

● 본인의 입학년도 교과과정 상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들어야만 전공필수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입학연도인 2014학년도 교과과정에 전공필수였던 과목이 2015학년도 현재 전공선택으로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본인 교과과정상 전공필수인 교과목이라면 현재 이수구분이 변경되었더라도 전공필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매학기 3월, 9월 중 이수구분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입학연도 교과과정에는 없는 교과목이더라도 소속 학과에서 신설된 전공필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 역시 전공필수로 인정됩니다.

● 타 학과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면 본인의 전공선택으로 인정됩니까?

- 타 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자유선택(일반선택)으로 인정됩니다.

- 단, 06~11학번의 경우 동일계열 내 타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교과목을 수강하면 졸업사정 시 18학점까지 본인의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스포츠과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제외).

- 12~14학번은 학과에서 지정한 5개 이내 교과목이 한해(15학번 이후는 4개 이내, 경영대학의 경우, 경영대학 내 개설 교과목 및 지정교과목 포함 6개 이내)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 교과목은<학사안내→교과과정→교과과정조회→전공선택 인정교과목 조회>에서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성적표상 기재되는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일반선택)이며, 이수구분 변경은 불가하며, 졸업사정 시에만 전공선택 학점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졸업사정 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1항~제4항

● 각 이수영역에서 남는 학점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 전공필수 교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초과되는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과목 단위로만 인정하였으나, 2021학년도부터 지침이 개정되어 학점 단위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4조(교과과정 및 이수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항

- 교양이나 전공 이수구분별로 초과되는 학점이나 타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자유선택(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06~11학번의 경우 공통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교양에서 초과되는 학점은 선택교양으로, 선택교양이나 전공 이수구분에서 초과되는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 근거: 졸업사정 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1항~제4항

● 06~11학번의 교과과정에 비해 현재 이수구분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교양 이수구분 별로 학점 이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공통교양의 경우 반드시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교과목이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경우는 유사 및 대체교과목을 조회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 핵심교양은 영역구분 없이 10학점을 이수하면 되며, 중점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면 핵심교양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학문기초교양은 학과교양을 수강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
- 공통·핵심·학문기초교양에서 남는 학점은 모두 선택교양으로 인정되며, 선택교양 또는 전공에서 남는 학점은 모두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 06~11학번의 경우 SDU교과목은 선택교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러닝 교과목은 인정 불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교과과정→교과과정 이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학번 이후 학생의 경우 중점교양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가요?

- 중점교양의 경우 영역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여 학과별로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합니다. 2022학번 이전 학생이 중점교양 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 중핵교양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채우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교과과정→교과과정 이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학번 이후 학생은 중점교양 이수시 영역을 분산하여 이수하라고 하던데 영역은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 중점교양은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EN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GEN1**의 경우 1영역, GEN3**의 경우 3영역을 의미합니다.
- 2022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 서로 영역을 분산하여 이수하여야 했으나, 2023학년도부터 영역구분 없이 학과별로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하면 됩니다.
- 2023학년도부터 중점교양은 중핵교양으로 변경되어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OR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COR1**의 경우 1영역, COR3**의 경우 3영역을 의미합니다.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중핵교양을 영역별로 3학점씩 필수로 이수하고, 잔여학점은 선택하여 이수합니다.

● 12학번 이후 학생의 경우 균형교양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가요?

- 균형교양을 이수해야 하는 2012~2016학번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균형교양을 영역별로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은 2017년 후기 졸업예정자(2018년 8월 졸업예정)부터 폐지되었으며, 이제는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 학점만 충족하면 됩니다.(동일영역 중복 인정)
 - 또한, 2017년 후기 졸업예정자(2018년 8월 졸업예정)부터 중점교양에서 초과한 학점은 균형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부족한 균형교양 학점만큼을 중점교양(중핵교양)에서 추가로 이수하여도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교과과정→교과과정 이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계획서는 어디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 수강신청 시에 강의시간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양필수인 Talking English를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 되나요?**

- 적용연도가 2014~2017인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양필수 과목으로 Talking English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2018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과목은 더 이상 개설되지 않으며, 대체과목인 미국에서 살아남기 1A~2B까지 총 4과목이 대체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이수하지 못한 과목의 대체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교과과정→교과과정 이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양필수인 봉사와헌신과 무도와인성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 되나요?**

- 적용연도가 2018~2022인 학생이 경우에는 반드시 교양필수 과목으로 봉사와헌신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2023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과목은 더 이상 개설되지 않으며, 봉사헌신 수강이 필요한 경우 대체과목인 FGE503 자기이해와봉사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연도가 2017~2022인 학생이 경우에는 반드시 교양필수 과목으로 무도와인성(태권도, 유도 중 한 과목을 선택)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2023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과목은 더 이상 교양필수로 개설되지 않으며, 무도와인성 수강이 필요한 경우 대체과목인 COR146 여행과삶:느리게,깊게,다르게 / COR450 생각의기술:지니어스씹킹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토대교양은 어떻게 이수하는 건가요?**

- 2025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영역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여 학과별로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합니다.
-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토대교양은 학과별 이수영역 분류에 따라 학생이 소속 학과 영역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합니다. 다만, 3학점은 모든 영역의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과별 이수영역 분류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교과과정→교과과정 이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사 및 대체교과목

● 유사 및 대체교과목은 무엇입니까?

- 교과과정 변경 등으로 교과목이 폐지되어 해당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유사한 교과목으로 대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았는데 유사 및 대체교과목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정 학기에만 개설되는 교과목일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교과목의 개설학과로 문의하여 교과목 폐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과목이 폐지된 경우는 개설학과에 유사 및 대체교과목 지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및 대체교과목을 조회하여 수강신청을 했는데, 오른쪽의 재수강버튼을 클릭해도 이전 교과목 내역이 뜨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회한 유사 및 대체교과목의 교과목명과 교과목번호가 모두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대체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개설학과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필수 교과목이 폐지되어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유사 및 대체가 지정되었습니다. 수강신청을 하니 전공선택으로 표시되는데 전공필수로 인정되는 건가요?

- 네, 유사 및 대체교과목이라면 이전 교과목의 이수구분과 동일하게 전공필수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통해 전공필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사안내→성적→이수구분 변경>을 참고하세요.

● 폐지된 공학교양을 재수강하고자 하는데, 2학점이었던 교과목이 타과의 3학점 교과목으로 유사 및 대체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합니까?

- 네, 유사 및 대체 교과목이 정확하다면 개설학과와는 무관하게 수강시 이전 교과목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강신청시 오른쪽 재수강 버튼을 클릭하면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재수강하는 경우는 이전에 들었던 2학점 교과목은 사라지고 뒤에 수강한 3학점의 성적만 남게 됩니다.

● 유사 및 대체가 지정된 두 교과목을 재수강하지 않고 이수할 수도 있습니까?

- 네, 유사 및 대체가 지정된 두 과목을 각각 수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수강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이수하면 두 과목 모두 성적표에 기재되며, 각각의 이수구분으로 인정됩니다.

- <GEN001 실용영어회화> 교과목이 2014학년도부터 <FRE041~043 TOEIC(초급.중급.고급)> 교과목으로 유사및대체 지정되었습니다. 2013학년도에 <FRE041 TOEIC(초급)>을 수강하였는데 <GEN001 실용영어회화>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인정 불가합니다. 유사 및 대체 교과목은 대체가 지정된 연도 이후로 인정되므로, 2014학년도 이후 <FRE041~043 TOEIC(초급.중급.고급)>을 수강한 경우에만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전공 마이크로모듈제 안내

● 전공 마이크로모듈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신청하고 이수 할 수 있나요?

- 모듈은 특정 진로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교과목 묶음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진로에 따라 모듈을 신청해 희망 진출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모듈을 이수완료 했을 때, 총장 명의 이수증도 별도 발급되게 됩니다.

모듈 개발이 완료된 42개 학과(기계공, 바이오소재공, 응용생물공, 경영, 국제무역, 경영정보, 관광경영, 식품영양, 건강관리, 산업경영공, 신소재공, 의약생명공, 컴퓨터공, AI학과, 바이오메디컬, 건축공, 패션디자인, 글로벌비즈니스, 영미, 아동, 행정, 경제, 건설시스템, 조선해양공, 화학공, 철학생명의료윤리, 화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금융, 식품생명공, 스마트그린자원학과, 도시공, 고고미술사학, 사학, 정보수학, 반도체, 조경학과, 전기공, 전자공, 환경안전, 미래에너지공학, 공공정책학)의 재학생 및 복수전공생에 한해서 마이크로모듈 이수 희망자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공 마이크로모듈제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학사안내 - 교과과정 - 전공 마이크로모듈제 안내>를 참고하세요.

● 타 학과 모듈은 이수할 수 없나요?

-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과의 전공 마이크로모듈을 이수할 수 있는 '복수전공 유형II'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기계공학과 학생이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각 학과의 전공교과목을 45학점씩 이수해야 하지만, 경영학과의 모듈을 선택해 이수하는 경우 36학점으로 경영학과의 학위와 모듈 이수증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듈에 지정된 교과목대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각 전공별로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복수전공>을 참고하세요.

● 모듈을 신청하긴 했지만 이수 완료하지 못하면 졸업에 지장이 있나요?

- 소속 학과의 모듈을 신청하였을 경우, 졸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듈을 이수완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포기절차도 두고 있지 않으나, 모듈 신청 후 전과를 하거나 이수 중인 모듈의 복수전공을 중도포기 하는 경우 신청한 모듈 또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다만, 복수전공 또는 융합전공II, 교양학사학위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전공 마이크로모듈을 신청한 후 모듈을 이수완료 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에 다전공 신청 시 정해진 이

수학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을 참고하세요.

● **모듈을 2개 이상 이수할 수 있습니까?**

- 네, 소속 학과 내 개설된 모듈은 희망할 경우 복수로 이수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모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 모듈이 설치된 각 학과사무실에서 모듈별 교과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학사관리과 수업팀(200-6122~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운영되어온 전공프로그램은 더 이상 모집하지 않나요?**

- 전공프로그램제도는 기존에 신청해 이수 중 이 학생들의 이수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규 모집은 2020학년도부터 중단 되었습니다. (사유: 전공 마이크로모듈제 시행)

Ⅲ. 학적

1. 휴학

● 일반휴학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휴학연장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는 없나요?

- 일반휴학과 휴학기간 연장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나서 향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을 할지 아니면 복학하지 않고 연장을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득이 복학이 곤란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학기간 만료 이전(1학기 복학예정자: 2월 말 일 까지, 2학기 복학예정자: 8월 말일까지)에 휴학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귀가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부대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병무청 혹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귀가사실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귀가일로부터 5일 이내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하여 귀가조치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학기초과자도 휴학신청이 가능한가요?

- 학점 부족, 필수과목 미이수 등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일 다음날 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강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졸업일로부터 다음학기 개강일까지는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신청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의 경우(휴학기간 연장 포함) 휴학은 불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생인데요. 잔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 휴학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2차분까지 납부한 이후부터는 나머지 잔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 까지 휴학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휴학을 꼭 해야 할 경우에는 남은 잔액을 일시 로 납부해야 하며, 잔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경리과(200-6702)로 방문하여 직접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을 하면 납부한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휴학을 하였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휴학신청일자에 따라 복학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재 산정 되는 방식이며, 자퇴를 하는 경우에만 수업 료 환불을 검토하게 됩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6조(등록금)제2항

● 등록금을 납부 후 개강 전에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액 다 이월되는 것입니까?

- 네, 맞습니다. 또한,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휴학할 경우 전액 이월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9월 30일까지 휴학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학기 복학시 에 추가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6조(등록금)제2항

● 휴학신청을 9월 30일에 했습니다. 행정지원실에서 휴학처리를 10월 5일에 해주셨는데 그럼 복학할 때 추가로 수업료를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학생의 휴학신청일(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음 학기 복학 시에 추가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6조(등록금)제2항

● 2학년 학생으로 현재 일반휴학 중입니다. 개인사정상 다시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휴학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연장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휴학기간 만료이전(1학기 복학예정자: 2월 말일 까지, 2학기 복학예정자: 8월 말일까지)에 인터넷으로 휴학연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복학하여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에 휴학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2조(휴학기간 및 연장)제1항, 제2항, 제3항

● 휴학연기는 2번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까?

-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는 휴학연기는 재학 중 단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2조(휴학기간 및 연장)제2항

● 휴학연기를 이미 한번 사용했어요. 이번에도 휴학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휴학연기는 이미 1회 사용하였으므로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2조(휴학기간 및 연장)제2항

● 휴학연기는 무조건 1년 단위로 사용해야 하나요? 한학기만 신청하고 싶습니다.

- 휴학연기를 1년으로 신청한 뒤 한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 1학기가 복학예정학기인데 복학하지 않고 휴학연기를 신청하게 되면 2027학년도 1학기로 복학예정학기가 다시 설정되지만 2026년 8월에 미리 복학신청을 하게 되면 2학기에 복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학연기는 사용기간이 비록 한 학기(6개월)이지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휴학기간은 추후 일반휴학 과정의 절차를 밟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거: 학칙 제25조(복학),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2조(휴학기간 및 연장)

● 예전에 수강신청하고 나서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이번에 복학할 때 이전에 수강신청했던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나요?

- 수강신청을 한 후 휴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강신청한 내역이 모두 소멸됩니다. 따라서 복학한 학기에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병역휴학을 하였는데, 하사관 복무로 인하여 군복무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학교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군복무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관 후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을 방문하여 병역휴학 기간(제대일 연장)을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FAX로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송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가족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5조(병역휴학)

● 현재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병역휴학으로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 휴학중 군입대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병역휴학으로 대체해야 하며,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군입대할 경우 복학예정학기에 복학을 할 수 없어 미복학체적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5조(병역휴학)제2항

● 8월 현재 아직 입영통지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11월 중에 군입대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2학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2학기를 다니다가 병역휴학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에 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병역휴학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역휴학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학기에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이월되어 추후 복학 시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5조(병역휴학)제2항, 제6조(등록금)제3항

● 군 입대를 하였지만 귀가조치가 되었어요. 학교에 신고해야 하나요?

- 병역휴학 신청자가 귀가조치 및 면제를 받은 경우 반드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귀가증 등)를 지참하여 귀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신고를 하여 병역휴학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7조(휴학취소)제2항

● 병역휴학을 신청해 놓고 입대 전에 다치는 바람에 입영(소집)기일을 연기하였습니다. 학교에 신고해야 하나요?

- 병역휴학 신청자가 입영(소집)기일을 연기한 경우 입영(소집)기일을 연기신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신고를 하여 기존에 신청한 병역휴학의 세부 사항(입대일, 제대일 및 복학예정학기)을 정정해야 합니다.



● **현재 1학년 신입생입니다. 현재 1학기를 하고 있는데 기말시험 전에 휴학이 가능합니까?**

- 신입생의 경우에는 최소 1학기를 이수한 후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병역휴학은 1학기 도중에 가능). 다만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 학업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하여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4조(일반휴학), 제5조(병역휴학)

● **등록금을 먼저 내고 휴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매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됩니다. 따라서 미리 휴학신청을 하지 말고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하면 됩니다.(휴학처리가 되면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가 불가함) 다만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휴학을 해야 등록금이 전액 이월되어 복학 시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6조(등록금)제2항

● **3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휴학신청을 했습니다. 휴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학년이 3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학하기 전에 4학년 1학기 등록금도 미리 납부하였는데 왜 학년이 3학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학년 진급의 경우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재학상태인 학생만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학기 개강 전 미리 2월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3학년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격증관련 시험 응시로 진급된 학년이 필요한 경우는 학사관리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마쳤습니다. 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복학할 때 납부해도 됩니까?**

-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고 휴학을 해도 되고, 아니면 추후 복학할 때 납부해도 됩니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기종료일(1학기: 8월 말, 2학기: 2월 말)전까지 인터넷으로 휴학신청 해야 하며, 복학 시에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휴학이 가능한가요?**

- 일반휴학은 학기별 수업일수 15주 종료일 2주 전부터 종료일 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4조(일반휴학)제2항

● **과거에 휴학한 학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 휴학증명서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휴학중임을 증명하는 것일 뿐 과거의 휴학기록에 대한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 휴학기록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학적부'를 발급받아야 하며, FAX 민원 신청 및 학사관리과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휴학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 계절학기를 이수중인 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하계계절학기의 경우에는 7월말, 동계계절학기의 경우 1월 말에 성적이 확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절학기 성적처리 일정에 대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4학년 2학기까지 마쳤지만 2학기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못해서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1학기는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 졸업학점 부족, 필수과목 미이수 등으로 인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학기초과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자임에도 불구하고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휴학불가) 다만 학기초과자의 휴학신청은 졸업일 다음날 부터 신청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의 경우(휴학기간 연장 포함) 휴학은 불가능합니다.

● **출산을 했습니다. 휴학이 가능할까요?**

- 임신·출산·만 12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육아휴학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2개 학기 동안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이 기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방문하면 육아휴학이 가능합니다.

● **창업을 해서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휴학이 가능할까요?**

- 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및 창업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창업지원단의 창업 확인을 받을 경우 최대 2개 학기 창업휴학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합니다(총4학기). 창업휴학을 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하며, 창업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은 휴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복학

● 복학예정학기를 조회해 보니 2026학년도 2학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8월 초에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됩니까?

-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자동으로 복학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예정학기에 인터넷으로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8조(복학), 학칙 제27조(제적)제1호

● 오늘 복학신청을 인터넷으로 하였습니다. 언제 재학상태로 변경됩니까?

- 복학처리는 각 대학 행정지원실에서 학생의 복학예정학기 및 학년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처리하므로 대략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기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데 재학생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수강신청은 먼저 복학처리가 완료되어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복학신청부터 먼저 하여야 합니다.

● 복학신청을 하였는데 처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 때문에 복학처리를 빨리 할 수 없습니까?

- 복학처리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학처리 시 대략 2~3일 정도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학기가 복학예정학기인데 복학하고 나서 바로 휴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만약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학하지 않고 휴학을 하려고 한다면 휴학기간 만료 이전에 휴학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2조(휴학기간 및 연장)제2항

● 2학기에 복학예정인데 하계 계절학기를 미리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까?

- 휴학생(병역휴학 제외)도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학기 진행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 및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졸업예정자였다가 졸업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안되었던 학기초과자의 경우에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 **군 전역 후 복학 시기는 언제이며,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면 되며, 조기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2개 이상의 전공이 개설된 학부(과) 학생이 1학년 1학기 이수 후 휴학하였을 경우, 복학은 1학년 2학기로 해야합니다.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복학신청하면 됩니다. 매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일정 등이 사전 안내되므로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복학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근거: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8조(복학)

● **복학하고 등록금을 내기 전에 수강신청이 가능한가요?**

- 복학신청 후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서 복학승인처리를 하게 되면 학생은 재학생 신분이며, 이때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 관계없이 수강신청은 진행할 수 있으나, 추후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강내역은 모두 무효처리 되며, 미등록제적처리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하고 나서 바로 전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 전과는 매년 1월 중순에 시행하게 되므로 1학기에 복학예정인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과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므로 전과신청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 미리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했는데 왜 4학년입니까?**

-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한 학기만 휴학하고 다시 1학기로 복학하게 되면 4학년이 맞습니다. 3학년 2학기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1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남은 학기 동안(3개 학기)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개설된 교과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도 2학년 1학기로 복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대를 해서 복학신청을 하다 보니 복학구분에 면제복학이라고 나오는데 면제복학이 무슨 뜻입니까?**

-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이 전액 이월처리 되었으므로 추가로 수업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수업료 면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병역의무의 면제와는 무관합니다. 미등록 휴학자가 면제복학이라 표기되는 경우에는 경리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전에 수강신청하고 나서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이번에 복학할 때 이전에 수강신청했던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나요?**

- 수강신청을 한 후 휴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강신청한 내역이 모두 소멸됩니다. 따라서 복학한 학기에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제적

● 휴학기간을 이미 모두 사용하였고 부득이하게 복학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니까?

- 복학해야 할 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됩니다.

※ 근거: 학칙 제27조(제적)제1호, 휴학복학에관한규정 제8조(복학)제1항

● 제적생인 경우 성적확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제적생의 경우 학생정보서비스(포털)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 발급을 통해 성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 제적된 학생의 경우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증명서에는 제적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적되었으면 저의 학적정보는 다 삭제가 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제적이 되었어도 학생의 학적정보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추후 재입학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학적정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전의 학사경고, 유급에 대한 제한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4. 자퇴

●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재학 중에 있는데 학기도중 자퇴를 하게 되면 전액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 재학생의 경우 자퇴를 신청한 날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업료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기 개시일 전 :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 : 5/6 환불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2/3 환불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1/2 환불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환불하지 않음

※ 근거: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제2항

● **자퇴 시에 평생지도교수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까?**

- 자퇴신청서에 평생지도교수의 면담이 필수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자퇴 처리됩니다. 평생지도교수는 학적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이었는데 휴학 전에 납입한 수업료를 자퇴 시 환불 가능합니까?**

- 등록을 하고 나서 휴학 도중에 자퇴를 하게 될 경우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업료를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기 개시일 전 :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 : 5/6 환불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2/3 환불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1/2 환불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환불하지 않음

※ 근거: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제2항

● **자퇴를 하였는데 자퇴한 기록이 성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에 기재가 됩니까?**

- 제적생은 해당 학위에 대한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자퇴 또는 제적된 기록은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적부를 발급 받게 되면 휴학, 복학내역 및 제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자퇴를 하고 싶은데 현재 해외에 있어 직접 방문이 곤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 자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부모님 등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동아대학교에 자퇴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까?
 - 이중학적 유지로 인해 불이익이 있는지 타 대학에 문의하여, 자퇴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자퇴신청을 하게 되면 제적처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자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자퇴하려고 하는데 휴학하기 전에 납부한 수업료 반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 휴학신청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휴학신청일에 따른 반환비율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나서 2025년 3월 15일(학기개시 30일까지는 5/6)에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2026년 1학기에 복학한 다음 또 다시 2025년 4월 10일(학기개시 60일까지는 2/3)에 휴학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5/6과 2/3중 더 낮은 2/3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이 만약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만원이 환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리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근거: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제2항

5. 재입학

● 1학년 1학기만 이수하고 자퇴하였습니다. 재입학은 언제할 수 있습니까?

- 1학기까지 이수하였다면 매학기 시작 전(1월 말, 7월 말) 재입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학기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재입학에 대한 세부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니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 학사경고 3회로 제적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학기에 재입학이 가능합니까?

- 학사경고나 유급으로 인한 제적 시 제적일로부터 한학기가 경과한 다음 재입학 신청이 가능하므로 바로 다음 학기에 재입학은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2025학년도 2학기를 마치고 학사경고를 통산 3회째 받게 되어 제적되면 2026년 2학기부터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바로 다음 학기인 2026학년도 1학기에는 재입학 불가)

※ 근거: 학칙 제13조(재입학)제2항

● 제적되기 전에 취득한 성적은 모두 삭제됩니까?

- 아닙니다. 제적 전에 취득한 성적은 모두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재입학 후 졸업 시까지 부족한 영역의 학점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 재입학 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지정된 기간 내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입학생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재입학을 하면 재입학금은 언제 납부합니까? 재입학금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까?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면 재입학금이 함께 포함된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재입학금이 포함된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 자퇴를 하였습니다. 재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부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합니까?

- 재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적되기 전까지 이미 취득한 성적은 모두 유효하게 남아 있으므로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후 자퇴하였다고 하면 2학년 2학기로 재입학이 허가되며 남은 학기동안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6. 전과

● 기계공학과 학생입니다.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신청했는데 경영학과로 전과를 할 수 있나요?

- 복수전공 이수자로 승인된 이후에는 복수전공 학과로 전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수전공하는 학과로 전과를 고려하고 있다면 복수전공 중도 포기절차를 먼저 진행하여 전과 신청 전까지는 복수전공 취소가 최종 완료되어야 합니다.

※ 근거: 전부(과)에관한규정 제3조(자격)제2항

● 2학년 1학기까지 총 3개 학기를 이수한 후 한 학기 휴학 중입니다. 내년에 복학해서 2학년 전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 2학년 전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학기 2개(통상 1학년 1학기 및 2학기)의 성적만 존재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수한 학기수가 이보다 적어도, 많아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미 3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에는 2학년 전과는 불가하며, 추가로 한 학기를 더 이수한 후 3학년 전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1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2학기는 사정상 휴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만 휴학하고 나서 복학하였는데 2학년 전과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 2학년 전과의 경우 2개 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개 학기만 이수하였을 경우 2학년 전과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근거: 전부(과)에관한규정 제3조(자격)제1항

● 전과 신청하려면 전과를 희망하는 학과의 전공을 미리 수강해야 합니까?

- 해당 학과의 전공은 전과가 확정된 이후부터 수강하시면 됩니다.

● 전과를 하려면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지원 자격이 되는데 그러면 계절 학기까지 모두 포함된 성적을 말합니까?

- 네. 맞습니다. 계절 학기를 통해 이수한 성적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3학년 전과를 해서 지금 학과의 2학년 전공을 못 들었는데 모두 들어야 합니까?

- 3학년 전과를 하게 된 경우 전과 후 소속학과 기준으로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하므로 취득하지 못한 1학년 혹은 2학년 전공필수 과목은 모두 취득해야 합니다.

※ 근거: 전부(과)에관한규정 제11조(교과이수)제1항

● 야간소속 학생입니다. 주간학과로 전과가 가능합니까?

- 야간소속 학생의 경우는 주간학과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 근거: 전부(과)에관한규정 제3조(자격)제2항

● 전과신청 후 수강신청과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 합격발표 전에는 합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1차 수강신청 때는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나서 발표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면 됩니다. 등록금 납부는 전과 합격 후 추가등록 기간을 활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2학년 과정을 모두 마쳤지만 희망유급을 신청하여 2학년때 받았던 성적을 모두 삭제처리하고 2학년 전과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희망유급을 신청한 뒤 바로 2학년 전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급처리된 학기의 성적이 모두 삭제처리 되고 남아있는 1학년 성적의 평점평균 및 취득학점이 전과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전과신청이 대략 1월 중순에 진행되므로 희망유급을 미리 신청하여 성적삭제처리 및 학년변경 처리를 먼저 한 후 전과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거: 전부(과)에관한규정 제4조(시기)

● 전과 신청자격에 수료학점 기준이 있던데 해당 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됩니까? 아니면 특정과목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까?

- 해당 수료학점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근거: 전부(과)에관한규정 제3조(자격)제1항

● 전과 이전 학과에서 수강한 전공과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전과 이전 학과에서 수강한 전공과목은 모두 자유선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전과 이후에는 새로운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다만, 교양필수처럼 모든 학과마다 공통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기존 이수구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전과 전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과한 학과의 전공교과목과 동일 교과목명이 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전부(과)에관한규정 제11조(교과이수)

● 수학과에서 경영학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전과하기 전에 경영학과에서 개설된 경영학원론을 이미 균형교양으로 이수했는데 학과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전과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과 이전 학과에서 수강한 과목에 대해 전과 이후 학과 기준으로 이수구분을 다시 일괄 변경처리 합니다. 해당과목은 경영학과 기준으로 학과교양에 해당하므로 이수구분을 균형교양에서 학과교양으로 변경처리 하게 됩니다. 동일한 원리로 전과 이전 학과인 수학과에서 이수한 학과교양들은 모두 균형교양으로 변경됩니다.

● 1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한 과목까지 감안해도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될 거 같아요. 전과를 희망 하는데 3학점 부족합니다. 혹시 동계계절학기로 부족한 학점을 채울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절학기를 통해 이수한 학점도 1학년 수료학점 계산할 때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2월초에 군 입대를 할 거 같은데 혹시 전과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매년 2월초에 전과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2월말 정도에 이루어 집니다. 또한 등록금 납부는 개강 후 1차 추가납부 기간인 3월초에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전과 절차가 모두 완료되므로 이러한 절차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휴학계획(입영연기 등)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들이 완료되기 전 휴학을 하게 될 경우 전과가 취소되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입영연기 등이 곤란할 경우 제대 후 복학한 다음 전과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학기 4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입니다. 전과지원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6개 학기 이수 및 3학년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평점평균 2.0 이상인 경우에 4학년 전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학년 전과는 전년도 3학년 전과를 시행하고 남은 여석으로 시행하므로 전출, 전입 여석이 없어 전과가 불가능한 학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과 관련된 자격조건은 모두 동일하며, 전과 후에는 전과한 학과 교과과정 기준으로 모두 이수하여야 하므로, 4학년 전과 시에는 초과 학기를 이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점평균이 2.2입니다. 전과지원이 가능할까요?

- 2학년 전과는 2개학기 수료, 1학년 수료학점 취득, 평점평균 2.0이상, 3학년 전과는 4개학기 수료, 2학년 수료학점 취득, 평점평균 2.0 이상, 4학년 전과는 6개학기 수료, 3학년 수료학점 취득, 평점평균 2.0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가능학과 및 여석은 매년 초 학사공지를 통해 공지되므로 학사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과 가능 학과를 알고 싶어요

- 계약학부(과) 및 정원의 전담학과, 간호학과, 의예과, 의학과, 작업치료학과 등을 제외한 학과로의 전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과로 인해 전출·입이 불가능한 학과가 생길 수 있으며, 매년 학과별, 학년별 전출·입 여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사공지 전부(과)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당인재학부도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과신청 가능합니다. 끝으로, 교육학과는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전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어떤 내용을 안내하나요?

- 전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과·전공 소개 및 교육과정 체계, 학년별 권장 이수 로드맵을 안내합니다. 또한 졸업논문, 졸업전시·연주,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등 학과별 졸업요건과 기존 취득학점의 전공 인정 여부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장학금 기준, 학과 특성화 사업 및 인턴십 등 지원 제도, 선배 진출 현황과 진로·취업 준비 방향, 학과 커뮤니티 및 지도교수 배정 등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전과 이후 학업계획과 졸업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가급적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학적조회 · 정정 및 증명발급

● 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 학사관리과로 방문하시면 석차를 직접 기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팩스민원으로 성적증명서를 신청하시고 비고란에 '석차기재'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방금 4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를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졸업예정학기가 개시된 후 졸업예정자로 등재된 학생에게만 발급가능합니다.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에 한하여 졸업예정자로 등재되므로 등록금이 미납되었거나 졸업예정학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도 발급되지 않으므로 졸업예정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휴학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 예비군 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복학예정일자가 기재된 증명서가 있나요?

- 본교의 경우 휴학중인 학생에 대해 복학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증명서에는 복학예정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 2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현재 3학년인데 수료증명서에는 수료학년이 1학년으로 나옵니다.

- 학생의 실제 학년과는 달리 수료증명서상의 수료 학년은 학생의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일반학과의 경우 2학년 수료학점은 65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본인의 취득학점이 65학점 미만일 경우 실제 학년은 3학년이라 하더라도 2학년 수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2학년 수료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각 대학의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학년	각 대학 [예외 적용 대상은 별도 명시]	간호학부 간호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 전공(5년제)	경영대학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공과대학 스마트제조 공학과
1학년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2학년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3학년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4학년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128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5학년				160학점 이상	

※ 근거: 동아대학교 학칙 제33조(수료학점)

- 발급기에서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생의 영문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합정보서비스 - 학적 - 개인정보 변경」에서 영문 이름을 등록 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개명을 해서 변경된 이름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동아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개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기재사항 변경신청」에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하여 개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와 ‘개명여부 표기’를 요청한 초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도 개명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적부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불일치 할 경우 인터넷, 팩스민원으로 증명서발급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휴학중인 학생입니다. 갑자기 재학증명서가 필요해서 그런데 휴학중에도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요?
 -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재학증명서는 재학 중인 학생만 발급 가능합니다. 반대로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휴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학교에 학적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재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IV. 성적

1. 성적관리기준

● 성적 평가 방법 및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합니다.
단, P/F, P/NP 등급으로 평가되는 교과목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등급	전공 교과목	교양 교과목	교직 교과목
A+ ~ A	A 등급 이상의 합은 30% 이하	A 등급 이상의 합은 30% 이하	A 등급 이상의 합은 50% 이하
A+ ~ B	B 등급 이상의 합은 70% 이하	B 등급 이상의 합은 60% 이하	B 등급 이상의 합은 90% 이하
C+ ~ F	C+ ~ F 등급의 합은 30% 이상	C+ ~ F 등급의 합은 40% 이상	C+ ~ F 등급의 합은 10% 이상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성적의 평가) 제1항

● NP로 평가된 교과목은 재수강 하여야 합니까?

- NP(Non-Pass)는 성적표에 표기되지 않고, 평점평균 및 학점(신청 및 취득)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P(Non-Pass)로 평가받은 교과목은 재수강도 가능하나 반드시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성적의 분류), 제3조(성적의 평점평균 및 백분위 환산점수 산출) 제1항

● F등급은 삭제가 가능합니까?

- 재수강을 신청하지 않는 한 F등급의 교과목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F등급이 있어도 영역별 이수학점 및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모두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졸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F등급의 교과목을 재수강하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된 경우 F등급의 성적으로 인해 전체 평점평균이 낮아집니다.
- ※ 근거: 동아대학교 학칙 제43조(취득학점인정),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성적의 분류), 제3조(성적의 평점평균 및 백분위 환산점수 산출) 제1항, 재수강에 관한 규정 제3조(신청교과목)



● **학점포기는 이제 할 수 없습니까?**

- 교육부의 개선권고(학점포기, 재수강 없이 F학점 삭제, 졸업사정시 F학점 무단 삭제)에 따라 이전 성적의 삭제는 반드시 재수강을 통해 삭제하여야 합니다.

※ 근거: 재수강에 관한 규정 제3조(신청교과목), 학점포기규정 2014.4.30. 폐지

● **평점평균 계산이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게 나옵니다.**

- 평점평균 계산 시 F등급은 포함하고, P등급은 제외합니다. 전 학기 누적평점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학기별 평점평균을 단순히 평균내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을 한학기에 이수한 것처럼 계산해야 정확한 평점평균이 도출됩니다. 이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환산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고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합니다.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성적의 평점평균 및 백분위 환산점수 산출) 제1항

● **현재 수강중인 과목이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해서 총 3학점 과목인데 혹시 이런 과목도 제한된 절대평가에 해당합니까?**

- 아닙니다. 제한된 절대평가는 순수한 실험, 실습, 설계 및 실기로 구성된 과목만 해당합니다.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 성적 평가합니다.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성적의 평가) 제2항

● **협정대학(타대학)에서 계절학기 이수 예정입니다. 지난 학기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동일명 교과목을 신청하여도 가능합니까?**

- 타대학에서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중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중취득 시에는 교과구분 및 교과목번호가 다르더라도 높은 성적의 교과목 학점을 인정하며 낮은 성적의 교과목은 삭제 처리됩니다.

※ 근거: 동아대학교 학칙 제43조(취득학점인정)

● **제가 이번학기에 평점평균 3.8을 받았습니다. 4.5만점이므로 백분위로 환산하면 3.8/4.5 X 100 아납니까?**

- 백분위 환산점수는 단순 비례식이 아니며, 산술식이 따로 있습니다.

$$[\text{백분위 환산점수} = \{(\text{평점평균} \times 100) - 100\} \times 0.114286 + 60]$$

소수점 다섯자리까지 인정하여 계산하며, 이에 산출된 백분위 환산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고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합니다. 그러므로 평점평균 3.8을 취득하였다면 백분위 환산점수는 92.00008이며, 92.00으로 표기됩니다.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성적의 평점평균 및 백분위 환산점수 산출) 제2항

- 현재 재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성적이 어떻게 표기 되나요?
 - 재수강으로 인하여 이전성적이 삭제되면, 해당학기 및 전체 학점의 평점평균은 재산정됩니다. 따라서, 수강확정 전과 후에 발급받은 성적증명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재수강 후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R'(Retake)이 표기됩니다.

※ 근거: 재수강에 관한 규정 제5조(성적처리)

- 성적 평가비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공의 경우 각 분포비율대로 반드시 등급이 부여되나요? 예를들어 20명이 수강인원인 경우 A+~A가 6명, B+~B가 8명, C+~F가 6명인가요?

- 반드시 분포비율대로 성적 등급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의 분포비율은 누계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공의 경우 규정상 A+~A등급은 30% 이하, A+~B등급은 70%이하, C+~F는 30%이상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명의 수강인원인 경우 A+~A등급은 최대 6명까지 부여할 수 있고, A+~B등급은 14명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등급의 구성이 A+~A는 2명, B+~B는 12명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성적의 평가) 제1항

-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교는 제한된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제한된 절대평가는 ①영어강의 교과목(강의시간표에 영어수업 표기) ②(이론없는) 실습교과목 ③의예과·의학과, 외국인, 석당인재학부생(~2016학번까지)을 제외한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교과목에 한해 시행합니다. 이 경우, A+~A등급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2명의 수강인원이 있는 경우 A+~A등급은 최대 6명까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성적의 평가) 제2항

- 시험 및 과제는 모두 제출했으나 출석을 많이 하지 못하였는데, 성적에 반영되나요?

- 공결을 제외하여 수업실시 시간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NP로 처리합니다. 체육특기자 또는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된 학생 중 스포츠단장이 인정하는 학생의 경우 공결을 포함하여 수업실시 시간의 1/2을 초과할 경우 F 또는 NP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단순 공결만으로는 출석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성적의 평가) 제6항

- 재수강을 통해 성적평점을 올리고 싶습니다. 재수강 횟수에 제한이 있는가요?

- 2018학번 이전학생의 경우 재수강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19학번부터는 재수강 횟수를 1회(유사및대체교과목 포함)로 제한(F등급 취득 시 제외)합니다.

2. 성적조회

● 기말시험이 끝나고 성적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7일 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적공시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성적입력조회에서 성적을 조회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적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성적 입력 및 공시)

● 성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성적을 입력하며 입력한 성적은 곧바로 성적입력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적입력이 끝난 후 7일 동안은 성적공시기간이고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직접 성적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교강사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성적 공시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성적 입력 및 공시, 제6조(성적확정 후 성적 정정))

● 등급 외 성적의 세부점수가 궁금합니다.

- 학생들은 본인의 학업성적 세부점수 및 등급을 성적입력조회기간에 조회가능합니다. 수업계획서 상의 평가비율에 따라 본인의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세부점수 및 등급을 확인한 후 담당 교강사에게 성적 정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 근거: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성적 입력 및 공시)

●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에 성적을 확인하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담당 교강사가 성적을 입력해야만 성적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담당 교강사가 아직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실험·실습교과목(이론 병행 교과목 포함)을 이수한 학생 중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입력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성적공시 및 정정 기간에 성적을 조회하는데 e-러닝 교과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 DAU(동아대학교)e-러닝과목은 담당 교원에게 이의신청하며, 부산·울산·경남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교과목(이하 "GeLC"), 영호남 3개 대학(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 영남대학교) 교과목은 GeLC 또는 영호남 3개 대학의 질문답변 게시판, 담당 교원 메일, 연구실전화로 직접 이의 신청을 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 **특별학점이나 사회봉사학점의 성적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특별학점이나 사회봉사학점처럼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성적 확정일 이후 성적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P/NP 교과목을 수강했습니다. 확정일이 지났는데도 성적표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60점 미만으로 인해 NP(Non-Pass)를 받은 경우라면 성적표에 표기하지 않고, 평점평균 및 학점(신청 및 취득)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학사경고

● 학사경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 1.5 미만이거나 9학점 이상 F등급을 취득하였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학사경고자 본인 및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며, 통지문 또한 발송됩니다.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3조(학사경고기준), 제4조(학사경고 통지)

● 이번 학기 처음으로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학기 수강신청 때 제한이 있습니까?

- 아닙니다. 최초 학사경고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학점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통산 2회째 받은 경우에만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3학점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직후 학기 1회만 적용을 받습니다.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5조(수강신청 학점 제한)

● 지난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는데 이번 2학기에 또 학사경고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학사경고 2번 받으면 유급됩니까?

- 아닙니다. 학사경고는 학기마다 일정기준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나, 유급의 경우 1년 성적(1학기, 2학기)을 모두 합산하여 유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학기 와 2학기 모두 학사경고를 받더라도 유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성적이 저조한 경우 유급에 해당할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3조(학사경고 기준), 제7조(유급기준)

● 1학기 때 학사경고를 받고 2학기 때도 학사경고를 받아서 유급되었습니다. 학사경고를 한번 더 받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됩니까?

- 1학기 2학기 두 번의 학사경고가 유급 1회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학사경고를 한 번 더 받을 경우 유급 1회 학사경고 1회가 되어 제적되지 않습니다.
(제적기준: 유급 통산2회, 학사경고 통산3회)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6조(학사경고 제적), 제8조(유급 횟수 및 시기)

● 1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으면 2학기에 성적이 좋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 학사경고는 학기 단위이며 장학금도 학기 단위입니다. 1학기 성적이 2학기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학기 학사경고가 2학기 성적에 따른 장학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학사경고 3회로 제적된 상태입니다. 재입학이 가능합니까?**

- 성적불량 제적(학사경고 3회)이 되었을 경우, 한 학기가 지난 후 여석이 있으면 재입학 가능합니다.

※ 근거: 동아대학교 학칙 제13조(재입학) 제2항, 재입학에 관한 지침 제2조(재입학대상)

● **학사경고 3회로 인해 제적처리되었다가 재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어떻게 됩니까?**

- 재입학하기 전의 기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입학 후 학사경고 횟수를 다시 계산하며 재입학 후 통산 학사경고 3회 시 제적처리됩니다.

※ 근거: 동아대학교 학칙 제13조(재입학) 제3항

●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평생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합니까?**

- 학사경고자 본인 및 학부모는 평생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의무로 진행해야 하며, 상담 결과에 따라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학생상담센터의 학습 및 심리상담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상담센터 및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Learning Talk'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긍정적 학습 습관 형성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여를 권장해드립니다(참여: <http://deco.donga.ac.kr>).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상담 및 프로그램 이수)

● **학사경고를 2회 받았습니다. 학습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학사경고를 통한 2회제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되는 '학습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DAU 자기관리학습법」교과목)을 의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1학점 자유선택으로 개설되며, P/F로 평가되므로 이수하지 못할 경우 평점평균에 반영됩니다. 해당 학생은 학사관리과에서 일괄 수강신청할 예정이며, 최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고, 수강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상담 및 프로그램 이수)

4. 유급

● 1학년 1학기만 마친 상태입니다. 성적이 너무 저조해서 한 학기 성적을 모두 삭제하고 싶습니다. 한 학기 성적으로도 유급이 가능합니까?

- 유급은 학년 단위이며 동일한 학년의 1학기, 2학기를 연속으로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한 학기 성적으로는 유급되지 않습니다.(단, 의예과·의학과는 예외)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7조(유급기준)

● 유급이 되어 해당 학년의 성적이 모두 삭제처리 되었습니다. 삭제된 과목 중 복원할 수 있는 성적도 있습니까?

- 유급된 학년의 성적 중 B등급 이상과 P등급 이상의 교과목은 성적인정 신청을 하면 다시 이수하는 학년 학기에 수강신청 없이 성적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적인정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최대수강신청학점에서 복원될 학점만큼은 제외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9조(유급자의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제2항

● 1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한 학기만 휴학하고 다음 2학년 1학기에 복학하였습니다. 이 두 학기의 평점평균이 1.2 미만일 경우에도 유급 대상입니까?

- 유급은 학년 단위이며 동일한 학년을 1학기 2학기 연속으로 이수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수한 2개 학기가 각각 학년이 다르므로 유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4학년도 입학 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여 2016학년도 2학기에 복학한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학년으로 평점평균이 1.2 미만일 때 유급대상이 됩니다.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7조(유급기준)

● 1학년때 유급을 하였는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은 1학년으로 해야 합니까? 2학년으로 해야 합니까?

- 유급 후 수강신청은 반드시 유급한 학년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학년 유급하였다면 1학년으로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9조(유급자의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제1항

● 유급 2회로 제적처리되었습니다. 재입학 가능합니까?

- 성적불량(유급 2회)으로 인한 제적일 경우, 한학기가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하며,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이 허가됩니다.

※ 근거: 동아대학교 학칙 제13조(재입학) 제2항, 재입학에 관한 지침 제2조(재입학대상)

● 유급 후 성적인정취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적확정일에 확인했더니 성적이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성적을 취득한 학기에 맞춰서 성적인정이 처리됩니다. 즉 1학기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다음 연도 1학기에, 2학기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받고 싶다면 그 다음 연도 2학기에 학점인정처리가 됩니다. 인정되는 학기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을 제외하고 수강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9조(유급자의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제2항

● 1학년 유급을 받았으며, 현재 유급학기를 포함하여 9번째 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학기초과자로 처리되니까? 학기초과자에 대한 등록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유급된 학년도는 취득한 성적이 없으므로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에만 등록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유급된 학년도는 수업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급된 학년도를 제외하고 정규 8개 학기[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10개 학기]를 이수한 후에야 학기초과자로 분류되어 등록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근거: 동아대학교 학칙 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항,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9조(유급자의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제2항

● 희망유급을 1번 신청했었습니다. 희망유급을 또 신청하고 싶은데, 그럼 유급 2회로 인하여 제적처리 됩니까?

- 희망유급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자격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며, 2회 이상 신청한다고 해서 제적처리되지 않습니다.

5. 이수구분 변경

● 현재 중점교양을 9학점만 수강하면 되는데 12학점을 수강했습니다. 초과한 3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까?

-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수하고 남은 학점은 자동으로 자유선택(일반선택)으로 인정되므로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5항 제9호

● 현재 수강신청을 완료하였는데 이수구분이 이상하게 표기됩니다. 수강신청한 과목의 이수구분도 바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까?

- 매학기 초 이수구분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뿐만 아니라 해당 학기 수강신청한 과목도 변경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강신청 후 이수구분이 잘못 표기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학번의 교양필수 교과목 폐지로 유사 및 대체교과목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양필수가 아니라 자유선택(일반선택)으로 표기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과목의 이수구분과 이후에 취득한 과목의 이수구분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양필수로 변경하기 원한다면 이수구분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취득한 자유선택(일반선택)으로 표시)

● 공대학생입니다. A과목이 저희 학과의 전공필수 교과목인데 타 학과 동일교과목명의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이수를 하였습니다. 제 소속 학과의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이수구분변경이 가능한가요?

- 동일교과목명일 경우 본인 소속학과의 이수구분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공학인증 대상자는 공학교양과 기초과학 및 수학의 경우 반드시 본인 소속 학과·학번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V. 졸업

1. 졸업기준 안내

● 졸업예비사정이란 무엇입니까?

- 졸업예비사정은 졸업예정자(8학기 이상 등록, 7학기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취득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과정이며 졸업예정자는 영역별 이수학점 부족에 대한 이수 안내를 통해 졸업학점을 충족시켜 나갑니다. 학생 본인의 영역별 이수 학점 과부족 정보는 '졸업관련 정보 일괄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신청(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학년 2학기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학과 및 학사관리과에서 졸업예비사정을 시행하여 졸업가능여부를 판단하며, 계절학기 수업을 통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졸업예정자들의 예비사정결과는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서비스 - 학부학사 - 졸업 - 학업성적 사정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2조(졸업사정 기준), 졸업사정지침 제2조(대상)

● 졸업사정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 졸업사정은 졸업예정자가 졸업예정학기에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별 이수학점은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서비스 - 학부학사 - 졸업 - 학업성적 사정표」에서 확인 가능하여 영역별 필요학점, 취득학점, 과부족 여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졸업관련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졸업사정을 미리 한다는 것은 학생 개인별 졸업학점이 각각 다르고, 학과 변동 등의 과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학년까지의 이수 성적으로는 정확한 졸업사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이전이라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면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며, 졸업논문도 합격하였습니다. 별도의 졸업을 신청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까?

-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졸업예정자로 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평점평균을 충족하였으며, 졸업논문을 합격하였으면 자동으로 졸업 처리됩니다. 만약 졸업을 유예하고 싶다면 꼭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 근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2조(졸업사정 기준), 졸업사정지침 제2조(대상), 동아대학교 학칙 제50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11학번입니다. 핵심교양 및 선택교양이 부족한데 지금은 그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취득해야 합니까?

- 핵심교양은 중점교양을 수강하면 됩니다. 선택교양은 중점교양(중핵교양), 타과의 학과교양 교과목을 취득하면 됩니다.

● 09학번입니다. 타과의 전공수업을 이수하면 전공심화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왜 성적표 상에서는 그대로 자유선택으로 표기됩니까?

- 2006학번부터 2011학번까지는 동일계열 내에서 타 학과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면 졸업사정 시 18학점까지 전공심화 영역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성적표상의 이수구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2항 제1호, 제3호

● 15학번입니다. 타과의 전공수업을 이수하면 전공선택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왜 성적표 상에서는 그대로 자유선택으로 표기됩니까?

- 2015학번부터 타 학부(과)의 전공선택 인정교과목을 이수하면 졸업사정 시 4개 교과목까지(2012~2014학번은 5개 까지) (경영대학의 경우 동일대학 내 개설교과목 및 지정교과목 4개를 포함하여 6개 까지) 전공선택 영역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성적표상의 이수구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4항 제1호, 제2호

● 공통교양 정보처리개론 2학점을 디지털정보활용으로 재수강하였더니 3학점이 되었습니다. 공통교양 학점이 초과하는데 남은 학점은 어느 이수구분으로 인정됩니까?

- 공통교양교과목 재수강으로 인해 초과되는 학점은 선택교양으로 인정되며, 선택교양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2항 제9호

● 10학번인데, 공통교양은 10학점만 취득하면 됩니까?

- 2006학번부터 2011학번까지는 공통교양 6개 교과목(실용영어회화, 영어독해및작문, 정보처리개론, 신입생강좌, 글쓰기, 실용한자)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재수강 등을 통하여 3학점 체계로 변경되면서 10학점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6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 복수전공자입니다. 본과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복수전공하는 학과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동일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본 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명과 복수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명이 같을 경우 그 학점만큼 복수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더 이수해야 합니다.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1항 제6호, 제2항 제5호, 제3항 제3호

● 12학번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복수전공학과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해 주는 타과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인정가능합니까?

- 복수전공의 전공선택 9학점은 반드시 복수전공학과에서 개설된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타학과 전공선택 인정교과목(타과수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3항 제6호

● 09학번인데 복학을 하고 나니 원래 제 학번 때 전공기본이었던 교과목이 전공심화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기본으로 인정 가능합니까?

- 본인 입학 이후부터 졸업시까지 동일 교과목명의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어느 쪽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즉, 전공기본으로도 인정 가능하며, 전공심화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4항 제3호, 제8호

● 전공필수 교과목을 초과해서 들었습니다.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합니까?

-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남은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교과목 단위로만 인정하였으나, 2021학년도부터 지침이 개정되어 학점 단위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4조(교과과정 및 이수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항

● 08학번인데, 1학년을 마치고 휴학했으며, 13년 2학년으로 복학하니 교과과정이 많이 바뀌어 있어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다른 학번의 교과과정을 이수해도 가능합니까?

- 입학년도의 교과과정 또는 복학 및 재입학 학년도와 학년을 같이하는 입학년도 교과과정으로 선택하여 이수가능합니다. 2008학년도 입학하였으므로 2008학년도 교과과정 또는 2013년 2학년으로 복학하였으므로 2012학년도의 교과과정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3조(사정기준) 제1항

● 전공필수가 3학점 부족하고, 전공선택은 3학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전공선택 학점을 전공필수로 인정 가능합니까?

- 전공필수를 대신하여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본과에서 개설되는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 복수전공을 이수 포기하였습니다.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이 9학점 있는데 이 교과목은 어느 이수구분으로 인정되니까?

- 2006학번부터 2011학번까지의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 계열과 상관없이 18학점까지 본 전공의 전공심화로 인정합니다. 2012학번부터는 복수전공 포기 시 기이수한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되, 학과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2012~2014학번 5개, 2015학번부터 4개 인정됩니다. 단, 경영대학의 경우 경영대학 개설과목(학과교양, 전공교과) 및 학과에서 지정한 4개 이내 교과목을 포함하여 6개 인정)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2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1호·제2호, 제4항 제1호·제2호

● 졸업예정자입니다. 졸업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서비스 - 학부학사 - 졸업 - 학업성적 사정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역별 이수학점 및 영역별 과부족(재학생)
2. 예비사정결과(4월 10월 진행, 졸업예정자)
3. 졸업논문 합격여부(졸업예정자)

졸업관련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2. 졸업논문

- 복수전공의 논문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전공의 학위증만 받게 됩니까?
 -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Ⅱ, 자기설계연계전공, 교양학사학위과정(리버럴아츠전공) 학생의 경우 해당 전공의 논문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졸업처리가 되지 않으며, 모든 논문이 통과한 경우에만 학위증 2개가 동시에 발부됩니다. (본전공과 복수전공을 분리하여 졸업사정하지 않음)

※ 근거: 졸업사정지침 제5조(사정방법) 제5항 제5조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졸업논문 제출은 어떻게 됩니까?

- 졸업논문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누계 평점평균을 충족하였다면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후 졸업예정 학기에는 반드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 근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 졸업논문은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까?

- 졸업논문과 관련된 자세한 일정은 소속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졸업논문시행규정 제4조(졸업논문계획서의 제출), 제7조(졸업논문의 제출)

- 수료생입니다.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즉시 학적상태가 졸업으로 변경되나요?

- 아닙니다. 졸업논문을 졸업예정학기 소정의 기간내(세부사항 학과문의)에 제출하면 심사가 행해지고 그 결과 통과가 되면 졸업논문을 제출한 학기의 졸업일자 이후 학적상태가 “수료“에서 졸업”으로 변경처리 됩니다.

-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어학성적이나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 교과과정의 특성에 따라 학과별로 졸업논문을 졸업종합시험, 시험·실습보고, 실기발표, 공인된 기관의 어학시험 및 자격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학사안내에서 졸업 → 졸업논문 → 논문대체 부분에서 ‘대체학과’와 ‘대체기준’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졸업논문시행규정 제13조(졸업논문의 대체 및 면제), 졸업논문 대체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1], [별표2]

●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못해 수료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졸업으로 변경되니까?

- 졸업논문에 합격하지 못하였다면 수료 후 10년 이내에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을 초과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후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졸업논문 심사 후 통과가 되면 졸업논문을 제출한 해당학기의 졸업일자 이후 학적상태가 졸업으로 변경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제출 일정은 학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동아대학교 학칙 제48조(졸업논문) 제3항

● 졸업논문 불합격하여 수료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료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졸업증명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최소 수업연한, 졸업학점, 소정의 성적, 졸업논문 등의 졸업요건 중 졸업논문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 학적이 수료상태가 됩니다. 수료생은 재학생이 아니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 2회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단, 10년을 초과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후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졸업논문을 합격하면 학적이 졸업상태로 변경됩니다. 수료생은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수료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졸업 이수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재수강, 취업준비 등을 목적으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수강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유예비(한 학기 수업료의 5.5%)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재학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언제 납부합니까?

-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경우 등록금 납부는 일반 재학생과 다릅니다. 매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에 따라서 학기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등록 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신청을 한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하므로 수강정정이 모두 끝난 뒤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수강신청학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학기초과자*	비고
수강신청 없음	해당학기 수업료 5.5%	해당없음	-
3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10 납부	해당학기 수업료의 1/6 납부	상이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납부		동일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동일
9학점 초과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동일

*학기초과자: 졸업예정자 중 학점 및 평점부족으로 인해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 3학점만 수강신청 하였는데 등록금이 전액 고지되었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경우 등록금 납부 일정이 일반 재학생과 다릅니다. 학기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기간에 고지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출력할 경우 전액이 표기된 고지서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이미 2번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할 수 없습니까?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중 최대 2번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이미 2회 사용하였다면 다음 학기는 반드시 졸업을 하여야 합니다.

※ 근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지침 제3조(연기기간 및 제한) 제1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했는데 취업이 되었습니다. 유예비 및 수강신청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취소되면서 졸업처리가 됩니까?

- 아닙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소정의 유예비 및 수강신청에 따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 근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지침 제5조(등록 및 수강신청), 제6조(권리와 의무)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은 언제 합니까?**

- 일반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하면 됩니다. e-러닝 교과목 및 재수강 신청도 가능합니다.

※ 근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지침 제5조(등록 및 수강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가 가능합니까?**

-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허합니다. 신중한 검토 이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 모두 취득했는데, 졸업논문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까?**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누계 평점평균을 충족하였으나, 졸업논문 불합격자인 수료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근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지침 제5조(등록 및 수강신청),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2조(졸업사정 기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해외 어학연수를 위하여 휴학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 군입대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지침 제3조(유예기간 및 제한) 제2항

4. 조기졸업

● 조기졸업 신청은 언제 합니까?

-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매년 1월 및 7월에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에서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근거: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4조(지원절차)

● 조기졸업 지원자의 수강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년제한 및 타과불가의 교과목들도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점이월제와 중복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 근거: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5조(수강신청)

● 조기졸업대상자는 국외 파견을 나갈 수 없습니까?

- 국외학기파견 등으로 한학기 모든 성적을 P등급을 받은 경우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근거: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7조(자격상실) 제4호

● 조기졸업대상자입니다. 이전 학기에 2학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학기에 이월학점 2학점 + 조기졸업생으로서 추가된 3학점을 통산하여 5학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조기졸업대상자는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월학점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과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무조건 3학점입니다.

※ 근거: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5조(수강신청)

● 조기졸업신청자입니다.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교직이수를 위하여 아직 학교를 더 다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조기졸업취소신청서를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능하며, 조기졸업을 취소하고 정규 8개 학기를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7학기[건축학과(5년제)는 9학기]만에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다음 한 학기를 휴학한 뒤에 졸업이 가능합니까?(단, 졸업논문 및 학업평점 충족되었다는 가정)

-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하면 일반 학생들처럼 정규학기 8학기[건축학과(5년제)는 10학기] 이상을 이수 한 후 졸업이 가능합니다. 휴학은 <학사안내 - 학적- 휴학>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자는 7학기[건축학과(5년제)는 9학기]만에 졸업학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학과 학생인데 현재 2017학년도 1학기 7학기 이수중이고, 2017학년도 2학기가 마지막 8학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 후 조기졸업을 신청하여 이번학기(2017년 8월)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습니까?
 - 우리 대학교 조기졸업은 6학기 또는 7학기(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5년제)의 경우 8학기 또는 9학기)만에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 이미 7학기를 이수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졸업을 할 시기를 초과한 것이 됩니다. 또한, 조기졸업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학기를 등록함으로써 조기졸업 이수가능 조건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8학기를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되고, 이는 자연스레 조기졸업의 조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7학기(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5년제)는 9학기)를 이수한 상태에서 조기졸업 신청 및 승인은 불가능 합니다.

Ⅵ. 복수·부·연계·자기설계연계· 융합전공

1. 복수전공

● 복수전공이란 무엇입니까?

- 본 학과(전공)와 다른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과정을 동등하게 이수하는 것으로, 각 학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양쪽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복수전공 신청은 언제하나요?

- 매년 1월 및 7월에 다전공(복수,부,연계,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모집공고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복수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전공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당시 휴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과별 1학년 수료학점의 기준은 건축학과, 간호학과가 35학점이며 그 외 학과는 모두 33학점입니다. (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 소속 학생의 1학년 수료학점 기준은 취득학점 35학점 이상으로 적용)

※ 근거: 복수전공 이수 규정 제3조(자격)

● 지금 휴학중인데 그러면 복수전공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 모집기간 중 휴학상태인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학처리를 먼저 진행 후 재학 상태에서 신청시기가 도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합격했습니다. 곧 바로 휴학을 할 수 있나요?

- 합격자 공고 후에는 휴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학을 하더라도 복수전공 자격은 계속 유지되므로 복학 후 바로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 복수전공 과목은 언제부터 수강할 수 있나요?

- 복수전공 합격자로 선발되면 바로 다음 학기부터 이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청하여 2월에 합격자로 선정되면 2023학년도 1학기부터 바로 복수전공 교과목에 대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공 교과목의 경우 대부분 편성되는 학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판단하여 수강계획을 세울 경우 학점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와의 상담을 거쳐 학기별로 체계적인 수강계획을 수립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전공 포기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매년 12월 및 6월에 온라인으로 다전공(복수,부,연계,자기설계,융합전공) 포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단, 졸업예정학기로 등재되면 온라인 포기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4학년 1학기까지는 포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공고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복수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복수전공 이수 규정 제8조(중도포기)

● **복수전공 이수 포기로 인한 복수전공 취득과목은 어떤 이수구분으로 인정됩니까?**

- 06~11학번의 경우,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은 계열에 관계없이 소속 학부(과) · 전공 전공심화 교과목으로 18학점까지 인정됩니다.
- 12학번 이후의 경우,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되, 소속 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2~14학번은 5개 이내 교과목, 15학번 이후는 4개 이내 교과목만 인정 가능).
- 학번별로 인정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복수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복수전공 이수 규정 제8조(중도포기)

● **복수전공 교직과정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복수전공 교직과정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공 교직과정자로 선발되기 전, 우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복수전공자로 선발되어야 합니다. 복수전공 교직과정자 선발은 전공교직 이수정원 200% 범위 내에서 교직과정 신청시 교직부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복수전공 교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직부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 학사관리과 교직운영팀 051-200-6110)

● **소속학과와 별도로 복수전공에도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복수전공 이수학생의 경우 원소속학과의 졸업논문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도 함께 제출(복수전공 논문은 복수전공 학과로 제출)하여 모두 심사에 통과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2. 부전공

● 부전공이란 무엇입니까?

- 소속 학과(전공)에 부전공으로 하고 싶은 학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제도로, 부전공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본 전공 학위증에 부전공 학과(전공)가 함께 표기됩니다.

● 부전공 신청은 언제하나요?

- 매년 1월 및 7월에 다전공(복수,부,연계,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모집공고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부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전공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당시 휴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과별 1학년 수료학점의 기준은 건축학과, 간호학과가 35학점이며 그 외 학과는 모두 33학점입니다. (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 소속 학생의 1학년 수료학점 기준은 취득학점 35학점 이상으로 적용)

※ 근거: 부전공 이수 규정 제3조(자격)

● 지금 휴학중인데 그러면 부전공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 모집기간 중 휴학상태인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학처리를 먼저 진행 후 재학 상태에서 신청시기가 도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전공을 신청하여 합격했습니다. 곧 바로 휴학을 할 수 있나요?

- 합격자 공고 후에는 휴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학을 하더라도 부전공 자격은 계속 유지되므로 복학 후 바로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 부전공 포기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매년 12월 및 6월에 온라인으로 다전공(복수,부,연계,자기설계,융합전공) 포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단, 졸업예정학기로 등재되면 온라인 포기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4학년 1학기까지는 포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공고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부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부전공 이수 규정 제7조(중도포기)



- **졸업예정학기인데 아직 부전공 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을 하지 못하나요?**
 - 졸업예정학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부전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전공을 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처럼 소속학과 기준으로 졸업사정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소속학과의 졸업요건에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 **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부전공 취득과목은 어떤 이수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06~11학번의 경우, 부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은 계열에 관계없이 소속 학부(과) · 전공 전공심화 교과목으로 18학점까지 인정됩니다.
 - 12학번 이후의 경우, 부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부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되, 소속 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2~14학번은 5개 이내 교과목, 15학번 이후는 4개 이내 교과목만 인정 가능).
 - 학번별로 인정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부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기설계연계전공

● 자기설계연계전공이란 무엇입니까?

-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설계 및 이수하는 융·복합형 전공입니다. 본 학과(전공)와 자기설계연계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양쪽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자기설계연계전공 이수 규정 제2조(정의)

● 자기설계연계전공 신청은 언제하나요?

- 매년 6월 및 12월(모집기간은 업무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모집공고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자기설계연계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설계연계전공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당시 휴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과별 1학년 수료학점의 기준은 건축학과, 간호학과가 35학점이며 그 외 학과는 모두 33학점입니다. (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 소속 학생의 1학년 수료학점 기준은 취득학점 35학점 이상으로 적용)

※ 근거: 자기설계연계전공 이수 규정 제3조(자격)

● 지금 휴학중인데 그러면 자기설계연계전공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 모집기간 중 휴학상태인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학처리를 먼저 진행 후 재학 상태에서 신청시기가 도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기설계연계전공 포기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매년 12월 및 6월에 온라인으로 다전공(복수,부,연계,자기설계,융합전공) 포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단, 졸업예정학기로 등재되면 온라인 포기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4학년 1학기까지는 포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공고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자기설계연계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자기설계연계전공 이수 규정 제7조(중도포기)

● 이수 포기시 자기설계연계전공 취득과목은 어떤 이수구분으로 인정되나요?

- 12학번의 이후의 경우,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되, 소속 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2~14학번은 5개 이내 교과목, 15학번 이후는 4개 이내 교과목만 인정 가능).

- 학번별로 인정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 개요 - 자기설계연계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신청서는 어디로 제출하는 건가요?**

- 학생이 직접 작성한 이수신청서는 평생지도교수님에게 제출하여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생이 편성한 과목을 토대로 평생지도교수님은 각 전공별 교수님과 함께 자기설계연계전공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이 직접 설계한 전공의 타당성 및 학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학생에게 이수신청서의 보완 및 수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보완 및 수정된 이수신청서 최종본과 함께 평생지도교수님이 발급하는 심사결과서(허가서)를 학사관리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속학과와 별도로 자기설계연계전공에도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자기설계연계전공의 경우 논문의 대체자격으로 어학성적(토익 700점 이상 OR TEPS 650점 이상 OR New TEPS 355점 이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졸업예정학기에 소속 학과로 해당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자기설계연계전공자는 소속 학과 논문과 자기설계연계전공 논문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4. 융합전공

● 융합전공이란 무엇입니까?

- 학생의 신산업분야 진출 경쟁력 확보 및 융·복합형 교육과정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개설된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융합전공은 교과편성 및 이수, 학위 수여 요건 등에 따라 융합전공Ⅰ과 융합전공Ⅱ로 구분됩니다.

□ 융합전공Ⅰ: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과과정을 따르지 않고 융합전공의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융합전공의 학위만 수여받음

□ 융합전공Ⅱ: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과과정과 함께 융합전공의 전공 교과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양쪽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받음

- 현재는 융합전공Ⅱ만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수방법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융합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융합전공 이수 규정 제2조(정의)

● 융합전공 신청은 언제하나요?

- 매년 1월 및 7월에 다전공(복수,부,연계,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모집공고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융합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합전공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당시 휴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과별 1학년 수료학점의 기준은 건축학과, 간호학과가 35학점이며 그 외 학과는 모두 33학점입니다. (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 소속 학생의 1학년 수료학점 기준은 취득학점 35학점 이상으로 적용)

※ 근거: 융합전공 이수 규정 제4조(자격)

● 지금 휴학 중인데 그러면 융합전공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 모집기간 중 휴학상태인 학생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학처리를 먼저 진행 후 재학 상태에서 신청시기가 도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융합전공 포기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매년 12월 및 6월에 온라인으로 다전공(복수,부,연계,자기설계,융합전공) 포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단, 졸업예정학기로 등재되면 온라인 포기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4학년 1학기까지는 포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공고

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융합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융합전공 이수 규정 제10조(중도포기)

● **이수 포기시 융합전공 취득과목은 어떤 이수구분으로 인정되나요?**

-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융합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되,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과 일치하는 과목의 경우에는 소속학과 기준의 이수구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2~14학번은 5개 이내 교과목, 15학번 이후는 4개 이내 교과목만 인정 가능).
- 학번별로 인정되는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안내 - 다전공개요 - 융합전공>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학과와 별도로 융합전공에도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융합전공 I 이수자는 융합전공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하며, 융합전공 II 이수자는 원 소속 학과와 융합전공의 졸업논문을 함께 제출하여 모두 심사에 통과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근거: 융합전공 이수 규정 제9조(학위수여)

VII. 학점인정 신청

1. 특별학점 인정

●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이 학번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 네, 특별학점은 교양필수(공통교양) 교과목 중 일부에 대해 적용되므로 본인이 이수하는 교과과정에 따라 인정 가능한 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정 교과목 안내는 <학사안내 - 학점인정 신청-특별학점인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학점을 신청하려면 수강신청 시 해당 학점만큼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학점 인정 신청은 수강신청학점과는 별개이므로, 최대수강신청학점 내에서 희망하는 만큼 수강신청 하시고 특별학점은 매학기 공지되는 별도의 기간 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거: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특별학점 인정)

● 이전에 이미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특별학점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교과목을 기이수하여 재수강이 가능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특별학점 신청을 통해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성적은 삭제되고, 특별학점 신청으로 받은 'P(Pass)' 학점만 남게 됩니다.

※ 근거: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재수강)

● 교양필수인 'Communication English'를 특별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꼭 텡스만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교양대학에서 실시하는 본교 자체시험(특별학점인정시험)을 통해서도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별학점인정시험 일정에 관해서는 교양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특별학점인정)

2.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은 어떤 것입니까?

- 군 복무 중 교육·훈련과정으로 인한 이수 또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과정(나라사랑)을 통한 교과목 이수 시, 복학 후 자유선택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거: 학칙 제43조의 7(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인정)

●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 복학 후 재학 중인 학생만 신청가능하며, 휴학 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 1학기에는 5월 경, 2학기에는 11월 경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신청 공고가 게시되니, 해당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군 복무 중 최대 인정학점은 어떻게 됩니까?

- 최대 12학점까지 자유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한 성적은 언제쯤 성적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 취득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기 성적으로 인정되며, 성적 확정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성적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학기의 성적표에 "P(Pass)"로 표기하며,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제외합니다.

● 군 입대전 취득한 교과목을 군 복무 중 학점 인정 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습니까?

-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교과목으로 우리대학교 개설 교과목의 재수강은 불가합니다.



VIII. 교직

1. 교직이수

● **교직 이수 시 최대 수강신청 학점 보다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최대수강신청 학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부)전공과 교직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학생은 최대수강신청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학점이월제는 적용안됨)

※ 근거: 학칙 제32조(취득학점)제1항, 제4항

● **현재 3학년(5학기 이상) 재학중인데 교직이수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3학기까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4학기째 재학중인 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5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교직이수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별도 절차가 있는가요?**

- 교직이수 취소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신청경로: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서비스 - 학부학사 - 교직 - 교직포기신청) 교직포기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수한 교직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 **현재 8학기 재학 중인데 졸업 요건은 충족하였는데, 교직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교직이수는 졸업을 하면 이수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재학 중에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학점 기준과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으로 학사학위 유예신청 기간 내 졸업유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조기졸업신청자입니다.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교직이수를 위하여 아직 학교를 더 다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조기졸업취소신청서를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능하며, 조기졸업을 취소하고 정규 8개 학기를 모두 이수하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입학자 교직이수자 선발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가요?**

- 2024학년도 입학자(2026학년도 이후 편입 및 재입학자 포함)부터는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영역에 디지털교육(2학점) 교과목이 추가되었으므로, 교직과목에서 26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학과는 교직과목으로 12학점 이수)



● **교직선발을 위한 사전 적인성 검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나요?**

- 네, 교직이수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학기 중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적인성검사에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합격 또는 미응시자는 교직이수 신청 불가)

● **교직이수 관련 문의: 학사관리과 교직운영팀(051-200-6110)**

2. 교원자격 필수 요건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 교직 필수 교육인인 '성인지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고, '교직 적인성 검사', '교육봉사활동' 총 4가지가 충족 요건입니다. 해당 요건들은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교원자격 필수 교육(성인지, 응급처치 교육)의 충족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 '성인지 교육'은 교육학과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2회 이수,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4회 이수를 해야하며, 교직과정의 경우 2회 이수해야 합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육학과, 교직과정 구분없이 2회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시 교원자격 취득 불가)

● 성인지 교육은 1년에 1회만 이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학기 모두 이수했는데 2회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성인지 교육은 학년도당(1년) 1회만 이수 인정됩니다. 두 개 학기 모두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수 횟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 성인지 오프라인 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성인지 오프라인 교육 대상자는 교육학과의 경우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의 경우 2023학년도 교직과정 선발자부터 이수 대상입니다. 오프라인 교육 대상자들도 온라인 교육 4차시를 모두 수강하여야 성인지 교육 이수 인정이 됩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외부에서 이수한 교육이 인정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교내에서 이수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만 인정이 됩니다.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학사관리과에서 승인받기 전에 이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소급해서 승인 가능할까요?

- 교육봉사활동은 시작 전 계획서 승인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후에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됩니다.

● 교육봉사활동 기준 시간(60시간)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교육봉사활동 일지와 확인서는 학사관리과 교직운영팀에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 교육봉사활동을 모두 충족했을 시 교육봉사활동 일지와 확인서는 매 학기 말(6월, 12월)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자에 한 해 당해 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

이 성적에 부여됩니다.(2학점 Pass 학점)

- **교직 적인성 검사를 2학년 재학 중에 실시했습니다. 2학년 때 이수한 교직 적인성 검사는 이수 횟수에 포함되나요?**
- 2학년 때 실시한 교직 적인성 검사는 교직이수자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전 적인성 검사이므로 필수 이수 횟수에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교직과정 선발 이후 졸업 전 까지 2회를 이수하셔야 합니다.